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2 - 28
----------	-----------

제출일자 : 2002. 11. .
제출자 : 재 무 과 장

■ 개정이유

- 국민의 정부 100대 정책과제로 선정·시행하고 있는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원가보상율의 80%까지 현실화】의 지속적인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 원가미달 수수료항목의 효율 현실화와 상위법령의 개정등에 따른 신규항목의 조속한 정비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함

■ 주요골자

- 제증명수수료요율중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부양가족사실확인외 48개 항목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 함. (안 제3조제1항 인상)
-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수수료중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신청 외 3개항목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 외 1개항목등 6개항목을 신설 함.
(안 제3조제1항 신설)
- 제증명수수료 요율징수 항목을 당초 96개항목에서 현행유지 47개, 인상 49개, 신설 6개항목 등 총 102개 항목으로 조정함. (안 제3조제1항 현황)

■ 개정근거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91-3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지침
- 개별법령에 의한 수수료 항목 신설
 - 내수면어업법 제23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3. 1.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구조문 대비표

(단위 : 원)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 인감에 관한 증명 (1)~(2) 생략				1. 인감에 관한 증명 (1) 현행과 같음			
2. 신상에 관한 사항 (1) 부양 가족 사실 확인 (2) 무적자 사실 확인 (3) 부재자 사실 확인 (4) 독자 사실 확인 (5) 이장재직 사실 확인 (6) 호(제)적부 멸실 확인 (7) 재직(퇴직,경력) 증명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500 500 500 500 500 500 500		2. 신상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800 800 800 800 800 1,000 1,0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 (2) 실수요자 사실확인 (3)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 확인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 확인 (5)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 (6) 생략 (7) 소유 사실확인 (8) 경작 사실확인 (9) 조립 실적확인 (10) 식품품목 제조보고 사실확인 (11) 자동차 미소유 사실확인 (12)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지방세에 관한 사항 (1)~(2) 생략 (3)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 신청	1통	500		4. 지방세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통	1,500	
5. 회계에 관한 사항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3) 원천과세 공제 증명 (4) 실적증명(공사,제조) (5) 보상금지불 증명	1통 1통 1통 1통 1통	500 500 500 500 500		5. 회계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1통 1통 1통 1통 1통	1,000 1,000 1,000 1,000 1,000	
6.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 (1)~(2) 생략				6.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7. 부동산에 관한 사항 (1)~(5) 생략				7. 부동산에 관한 사항 (1)~(5) 현행과 같음			
8. 측사에 관한 증명 (1) 측사표준설계서발급신청	1건	500		8. 산업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1건	800	

신·구조문 대비표

(단위 : 원)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2) <신설>				(2)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건	5,000	
(3) <신설>				(3) 내수면어업면허신청	1건	10,000	
(4) <신설>				(4)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1건	5,000	
(5) <신설>				(5) 유향어업사용허가	1건	5,000	
9. 주택에 관한 증명				9.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500		(1) 현행과 같음	1통	800	
(2) 공(시)영주택분양금납부증명	1통	500		(2) 현행과 같음	1통	800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1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500		(1) 현행과 같음	1필지	800	
(2)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500		(2) 현행과 같음	1필지	1,000	
(3)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500		(3) 현행과 같음	1필지	1,000	
(4)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500		(4) 현행과 같음	1필지	1,000	
(5) 체비지 분할 신청	1건	500		(5) 현행과 같음	1건	1,000	
(6) 토지대금 완납 증명	1통	500		(6) 현행과 같음	1통	1,000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체비지명의 변경신청서	1건	500		(8) 현행과 같음	1건	1,000	
(9) 토지사용(체비지)승락	1건	500		(9) 현행과 같음	1건	1,000	
11.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700		(1) 현행과 같음	1건	1,000	
12. 문화공보 등에 관한 사항				12. 문화공보 등에 관한 사항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연장업등록(변경)신청	1건	2,000		(2) 현행과 같음	1건	10,000	
(3)~(5) 생략				(3)~(5) 현행과 같음			
(6)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1건	500		(6) 현행과 같음	1건	1,000	
(7) <신설>				(7) 체육시설업 신고	1건	5,000	
(8) <신설>				(8)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5,000	
13. 보건사회 등에 관한 사항				13. 보건사회 등에 관한 사항			
(1) 생략				(1)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의료기관 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1건	10,000		○ 현행과 같음	1건	15,000	
○ 생략				○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안경업소 관련 신고				(3) 현행과 같음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5,000		○ 현행과 같음	1건	8,000	
○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1건	5,000		○ 현행과 같음	1건	8,000	
(4) 위생관련 영업				(4) 현행과 같음			
○ 위생처리업변경 신고	1건	5,000		○ 현행과 같음	1건	8,000	
○ 생략				○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단위: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규신고	1건	<u>2,300</u>		○ 현행과 같음	1건	<u>4,000</u>	
○ 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	1건	<u>1,200</u>		○ 현행과 같음	1건	<u>2,000</u>	
(5) 장난감 제조업				(5) 현행과 같음			
○ 장난감제조업신규 신고	1건	<u>2,300</u>		○ 현행과 같음	1건	<u>4,000</u>	
○ 장난감제조업변경 신고	1건	<u>1,200</u>		○ 현행과 같음	1건	<u>2,000</u>	
(6) 기타				(6) 현행과 같음			
○ 이·미용사신규면허	1건	<u>2,300</u>		○ 현행과 같음	1건	<u>3,000</u>	
○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	1건	<u>2,000</u>		○ 현행과 같음	1건	<u>2,500</u>	
○ 영업양수신고	1건	<u>2,300</u>		○ 현행과 같음	1건	<u>2,500</u>	
14. 상수도에 관한 사항				14. 상수도에 관한 사항			
(1)~(8) 생략				(1)~(8) 현행과 같음			